



보 도 자 료

▶ 장애인고령자고용과장 정 성 균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손 성 길
 T E L : 02-2110-7315
 E-MAIL : immerknabe@molab.go.kr
 F A X : 02-507-6944

▶ 2009. 5. 12(화) 배포
 ▶ 총 2쪽 (사진없음)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알림마당 → e-노동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취업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

- 노동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또는 법인도 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가 확대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고령자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09년 5월 12일 입법예고하였다.
 - 법 개정을 통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등을 포함하여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을 다양화하고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 고령자에 대한 단순 취업지원 기능에서 벗어나 직업훈련을 비롯한 고령자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 구체적인 고령자인재은행 기능 확대 및 내실화 방안은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

- 고령자인재은행은 고령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직업진로지도·재취업상담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취업지원 기관으로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5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금번 법 개정안에는 '구인·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 훈련', '취업 적응훈련' 등 고령자 취업지원에 관한 일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 기업의 규제개혁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중복요인이 있고, 복잡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정년연장 지도 관련 행정조사·지도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였다.
- 노동부는 법 개정안에 대해 2009년 5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 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1일까지 노동부(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15, 7318)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붙임 :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 1부.
 2.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현황 1부. 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09. 5월

노동부

1. 제안이유

- 가.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공동권한에 관한 사항 규정
- 다.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현행법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
- 라. 민간의 규제개혁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중복 요인이 있고 복잡한 행정조사·지도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과중한 행정부담 경감 및 고령자 고용안정 지도의 합리적 균형을 도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 범위 확대(안 제11조제1항, 제2항)
 - (1) 현재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대상 기관은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로 한정되어 있음
 - (2)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까지 확대하고,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에 고령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명시함
 - (3) 그간 단기 일자리 대한 취업지원에 편중되었던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이와 연계한 쉼장은 일자리에 대한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중앙과 지방의 공동권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 (1) 현행법은 고령자 구인·구직 정보수집(법 제5조), 직업능력 개발훈련 실시(법 제6조제1항), 취업 적용훈련 실시(법 제6조제2항), 고용정보센터의 운영(법 제10조제1항)에 관해 노동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 (2) 자치단체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한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확보되어 업무추진이 용이하며, 지방자치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지방이양추진위원회(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07.10.5)에 따라 상기 4가지 사항에 대한 권한을 국가에서 국가, 시·도의 공동사무로 규정함
- (3) 자치단체의 경우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노하우 등이 일정 부분 확보되어 있으므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고령자 취업지원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용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관한 근거 법률 명확화(안 제16조)

- (1) 현행법은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관하여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외에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을 일부 적용하고 있어 법체계상 모순된 측면이 있고,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2)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받은 공공기관으로 규정하되,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대체로 규모가 작고 우선고용직종이 전혀 없는 기관도 있는 등 공공부문 우선고용직종으로 관리할 실효성이 적어 제외코자 함
- (3) 신·구법이 동시에 적용됨에 따른 법체계상의 모순을 바로잡고, 정책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일원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민간 규제개혁 건의사항 관련 행정조사·지도 절차 정비(안 제13조제2항·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항, 제22조, 제24조제2항제2호·제3호·제4항·제5항·제6항)

- 1)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작성·제출의무 폐지 및 관련 행정지도 절차 정비(안 제13조제2항·제3항, 제17조제2항)
 - (1)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고령자 기준 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작성·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계획에 대해 계획변경·계획 실시 권고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민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작성·제출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관련 행정조사·지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지도 절차를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고용지원금 지원 등의 지원 방안과 연계시키고자 함

(3)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업의 과중한 행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행정지도 절차를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기업이 행정지도를 이행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 작성·제출의무 폐지 및 관련 행정지도 절차 정비(안 제20조제2항·제3항, 제22조)

(1) 현행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계획에 대해 계획 변경 권고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민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관련 행정조사·지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지도 절차를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고용 지원금 지원 등의 지원 방안과 연계시키고자 함

(3)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업의 과중한 행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행정지도 절차를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기업이 행정지도를 이행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별도의 계획서 작성·제출 의무 폐지 등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규정 정비 (안 제24조제2항제2호·제3호, 제4항, 제5항, 제6항)

별도의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정년연장 계획 제출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미제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08년)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절차 규정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와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의 “노동부장관은”을 “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의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및 시설 또는 기관을”로 하고, 제1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3.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11조제2항의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현행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3조의 제명을 “사업주의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수립 등”에서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으로 변경하고, 제2항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를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로 하며, 현행 제3항, 제4항을 삭제한 후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 등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 외에 상담, 자문 등 그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 “지정받은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은”을 “지정받은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의 기타공공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의 “제13조제4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을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명을 “정년 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등”에서 “정년 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으로 변경하고, 제2항의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를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로 하며, 현행 제3항을 삭제한 후 현행 제4항을 제3항으로 하여 “제3항에 따른 변경 권고에”를 “제2항에 따른 권고에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한다.

제22조의 “노동부장관은”을 “노동부장관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제14조제2항의 고용지원금 중 정년연장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의 “고령자 고용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
고용률 이행계획”을 “고령자 고용현황”으로 하고, 제3호의 “정년제도
운영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년연장계획”을 “정년제도 운영
현황”으로 하며, 제4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인·구직 정보수집) <u>노동부</u> 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 (求人)·구직(求職) 정보를 수집 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 하여야 하며 관련정보를 구직자 ·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 하여야 한다.	제5조(구인·구직 정보수집) <u>노동부</u> 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 ----- ----- ----- -----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① <u>노동부장관</u> 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① <u>노동부장관</u>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는 ----- ----- ----- ----- -----
② <u>노동부장관</u> 은 고령자가 작업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u>노동부장관</u> 및 특별시장·광역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는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①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② 고령자인재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① 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 -----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및 시설 또는 기관을 -----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3.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

1. (현행과 같음)

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

<신설>

3.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④·⑤ (생략)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 이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사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작성한 사업주에게 그 계획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4. -----

③·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현황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신 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 등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 외에 상담, 자문 등 그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① (생략)

② 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 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 지정받은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의 기타공공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이하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업주(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정년 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등)

① (생략)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 및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른 권고에 정당한 사유 없이 -----

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제14조제2항의 고용지원금 중 정년연장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

제2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 제도 운영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년 연장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5 (생략)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제2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고령자 고용현황 -----

3. -----
----- 정년제도 운영현황 -----

4·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⑤ <삭제>

<p>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⑥ <삭제></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p>노동부 고용정책실 장애인고령자고용과</p>	
<p>연락처</p>	<p>(02) 2110 - 7315</p>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현황('09.3.1.기준, 50개소)

연번	관 할 선 터	기 관 명	소 재 지	연 락 처
1	서 울 중 합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서울 중구 남창동 1-2 상동빌딩6층	02-752-4222
2	서 울 중 합	생명외전화종합복지관	서울 성북구 하월곡1동 96-155	02-916-9193
3	서 울 동 부 중 합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서울 강동구 천호3동 555	02-2041-7850
4	서 울 동 부 중 합	대한은퇴자협회	서울 광진구 광장동 244-24	02-456-0308
5	서 울 서 부 중 합	이화여대종합사회복지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1-826번지	02-3277-2599
6	서 울 서 부 중 합	(사단법인)노정회	서울 마포구 공덕2동 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 205호	02-2672-1697
7	서 울 북 부 중 합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257번지	02-934-7711
8	서 울 북 부 중 합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서울 노원구 당고개길 228번지	02-952-0333
9	서 울 관 악 중 합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서울 동작구 대방동 5-1	02-814-8114
10	서 울 관 악 중 합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8-5	02-6300-6519
11	의 정 부 중 합	의정부YWCA	의정부시 신곡동 762-2 엘리트타운 503호	031-853-6332
12	춘 천 중 합	춘천YWCA	춘천시 요선동 4-6	033-251-2238
13	강 룡 중 합	강릉YWCA	강릉시 교동 8-3	033-651-1385
14	원 주 중 합	원주YWCA고령자인재은행	강원 원주시 입산동 194-5	033-742-6090
15	태 백 중 합	진폐재해인무료직업소개소	강원 태백시 상장동 211-1	033-554-0357
16	부 산 중 합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467-1 영동플라자	051-807-7954
17	부 산 동 부 중 합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442-1	051-503-7268
18	부 산 동 부 중 합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 해운대구 좌1동 1464-3	051-701-2431
19	부 산 동 부 중 합	(사)노정회부산지회	부산 동래구 명륜동 634-3	051-555-4277
20	부 산 북 부 중 합	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	부산 북구 구포3동 복자1길 37	051-337-5959
21	울 산 중 합	울산YWCA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185-4번지	052-247-3520
22	울 산 중 합	울산사회복지연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4-7번지 4층	052-244-8219
23	진 주 중 합	진주YWCA	경남 진주시 상대2동33-106	055-753-6133
24	통 영 중 합	거제 육포종합사회복지관	경남 거제시 육포동 산 660-4번지	055-639-8151
25	대 구 북 부 중 합	대구달서여성인력개발센터	대구 달서구 송현2동 1915-6번지	053-285-1331
26	대 구 북 부 중 합	대구달서시니어클럽	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77-6 3층	053-626-8315
27	포 함 중 합	포항YWCA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7-2	054-274-4444
28	구 미 중 합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공단동 164	054-467-0784
29	영 주 중 합	영주가흥종합사회복지관	경북 영주시 가흥1동 1385	054-636-0834
30	안 동 중 합	안동YMCA	경북 안동시 송현동 319-1	054-858-8219
31	경 인 중 합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0-1	032)428-7138
32	인 천 북 부 중 합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397-4	032-524-8832
33	수 원 중 합	수원YWCA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89-2	031-252-5111
34	평 태 중 합	평택YWCA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485-17	031-651-7701
35	부 천 중 합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093번지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032-652-1949
36	안 양 중 합	(사)성민원	경기도 군포시 당동 785	031-399-3020
37	안 산 중 합	안산YWCA고령자인재은행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2 하늘법조빌딩 412	031-439-2098
38	성 남 중 합	성남 YWCA	경기 성남 분당구 이매동 91-1 미래빌딩 3층	031-701-2501
39	광 주 중 합	광주YWCA	광주 북구 유동 107-5(광주YWCA1층)	062-526-1182
40	진 주 중 합	진주YWCA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5471-	063-224-5501
41	인 산 중 합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	(570-075)전북 익산시 신동 311-2	063-833-0334
42	군 산 중 합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전북 군산시 중앙로27140-8번지	063-446-7575
43	목 포 중 합	목포YWCA 고령자인재은행	목포시 호남동 450	061-242-1611
44	순 천 중 합	여수YWCA	전남 여수시 여서동 226	061-654-2161
45	순 천 중 합	순천YWCA	전남 순천시 저전동 194-1	061-774-7990
46	대 전 중 합	조치원 YWCA	충남 연기군 조치원을 교리 22-6	041-865-2432
47	천 안 중 합	천안 YWCA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410-4	041-578-5863
48	충 주 중 합	충주YWCA	충남 충주시 상내동 498번지	043-842-1929
49	제 주 중 합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79	753-8093
50	제 주 중 합	서귀포YWCA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80-8 2층	064-762-1400